

산후우울증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확대

<p>관련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은 산모 산후조리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지원대상·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례 제4조의3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임신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위한 검사, 상담·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공식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에 대해 마음치료센터·상담소 등 서비스 업체 이용은 허용하면서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병원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상 규제가 아니라, 지원사업의 사용처 및 비용 인정 범위를 정하는 운영기준에 해당함. ○ 따라서 개선 대상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의 사용처·비용 인정 기준 및 이에 따른 카드사 결제·정산 절차임. 산후우울 관련 병·의원 진료·검사·치료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p>제안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구매, 산후운동 및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에 대해 상담소 등 서비스 업체의 이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의

	<p>료기관에서 산후우울 관련 진료·검사·치료가 필요한 산모는 바우처 잔액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정서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본 제안은 이러한 기존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지급된 산후조리경비를 산모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개선하려는 것임. ○ 따라서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 진료·검사·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원 항목과 증빙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산모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산후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p>규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에 대해 마음치료센터·상담소 등 서비스 업체의 이용은 허용하면서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음. ○ 이에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 진료·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 산후 정신건강 회복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이용기관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해당 제한은 의료기관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상 규제가 아니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사용처 및 비용 인정 기준에 따른 제한임. 따라서 개선 대상은 사업 운영기준과 이에 따른 카드사 결제·정산 절차임. ○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 진료·검사·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인정 항목과 증빙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 및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검토하도록 함.
<p>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사용처 기준 보완 필요 <p>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우울 관련 상담소 등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진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산모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산후우울 관련 진료·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p>

○ 상담 이후 진료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완화 필요

상담 이후 의료기관 진료에 필요한 경우, 바우처 잔액이 있더라도 해당 진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기존 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산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비용 인정 기준 마련 필요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비를 허용하기보다는 산후우울 관련성이 확인되는 외래 진료·검사·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인정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급여 항목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이용 편의와 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한 정산 절차 마련 필요

산모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원 대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카드사 결제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직접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정산과 바우처 잔액 차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아울러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건강정보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함.